

( 공 포 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등명칭변경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5. 10.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 상 준

교육규칙 제 37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등명칭변경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법률 제4347호, '91.3.8 공포)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등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교육구청"은 "교육청"으로 "교육구청장"은 "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각종 교육규칙의 제명 및 내용중 명칭변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변경내역) 다음 각호의 교육규칙중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관"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관"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구청과이하사무분장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과이하"를 "교육장소관"으로 하고, 제1조중 "교육위원회교육구청의 과이하"를 "교육장소관"으로 한다.

Faint, illegible text at the top of the page, possib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Faint, illegible text in the middle section of the page.



Faint, illegible text at the bottom of the main content area.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제4조의3 제4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제5조 제1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제2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5조 제2항, 제11조중 "시,도교육장"을 "시,도 교육감"으로 하며, 제11조중 "시.군및 자치구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제20조 제4항 제1호중 "시,도교육장"을 "시,도 교육감"으로, 제24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8조 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제44조의2 제1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9호, 제20호, 제26-1호, 제26-2호, 제26-3호, 제26-4호, 제26-5호, 제26-6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하고, 제21호의2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시교육청"으로 "교육(구)청"을 "각 교육청"으로 하며, 제23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명 및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하고, 제3조 제1호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며, 제4조 제3항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하고 제7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며, 제2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하고, 제9조중 "교육위원회에"를 "교육감소속하"로 제25조중 "교육위원회는"을 "교육감은"으로 하며,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3항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Faint, illegible text at the top of the page, possib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Faint, illegible text in the middle section of the page.



Main body of faint,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시행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 학예에 관한"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관한"으로 제3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로 "교육구청"을 "교육장소속하"로,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제4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장소속하"로 제5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로 제6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별지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관한"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며,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제10조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각종 심사수당지급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 학예에 관한"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한다.
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각종 지도수당지급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 학예에 관한"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직원"으로 하고,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2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및그"를 "교육감"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문교 부"를 "교육부"로 한다.
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교육구청장"을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하고, 제2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제3조중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장"을 "교육감과



- 교육장"으로 하고, 다만 이하를 삭제한다. 제4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며,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고, 제7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며, 제8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제9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법률고문운영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관한"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의"를 "교육학예에"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중 "교육위원회 또는"을 삭제하고, 제2호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감을"로 한다.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위임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규칙 제명 및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감을"로 한다.
  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명 및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관한"으로 하고, 제5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상조례시행규칙 제명, 제1조, 제3조 및 서식 1호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호중 "문교정책"을 "교육정책"으로 하며, 서식 1호중 "위원회"를 "교육청"으로 하며,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17. 서울특별시장학위원 학사시찰규칙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장학위원에관한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을정고시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 서식중 "당 위원회에서"를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5호 서식중 "상기자는"을 "위 사람은"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수교육대상자판별위원회규칙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조중 "교육위원회에"를 삭제하고, 제2항 제2호중 "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고, 제8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 제2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8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제3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7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6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 및 각급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칙 제3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학교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 제5호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입고졸검정고시의 각종위원및시험감독관수당지급규칙제명및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2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실업고등학교부설실업기술원양성소 수당지급규칙제명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28.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호및 제2호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한다.
29. 서울특별시학교체육지도위원회규칙 제1조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하고, 제2조중 "교육위원회내에"를 "교육감소속하에"로 하며, 제3조 제3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체육특기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이"로 한다.
31.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하고, 제4호 가목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하고, 제6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며, 제9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학교평가위원회규칙 제1조중 "교육위원회에"를 "교육감소속하에"로 하고, 제6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하고, 제5호중 "교육위원회를"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을"로 하고, 제6호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고, 제3조 제2호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제3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제2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58조 제1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제65조 제2항 및 제66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며, 제66조 제4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고, 제89조중 "교육위원회"를 "본청"으로 하고,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제92조 제3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며, 제137조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제150조 제1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152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 보"를 삭제하며, 제174조 제2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44호의 1 서식중 납부서의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입찰(계약, 하자 보증금 보관원부 및 보관증의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제44호의 2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56호의 2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제57호 서식중 "귀 위원회"를 "귀 교육청"으로, 제61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3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3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제2호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1991. 5. 15자로 폐지한다.